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
(복기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1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9.

발 의 자 : 복기왕 · 윤종균 · 박용갑  
조계원 · 임호선 · 정준호  
황명선 · 염태영 · 이연희  
송기현 · 민병덕 · 송재봉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·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, 측량,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.

또한 드론 이용층도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으며, 수요 증가와 함께 고고도,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의 보급도 늘어 나고 있음.

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특히, 원자력발전소, 군사시설,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,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,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.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(무인자유기구는 제외)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,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, 안 제166조제3항제5호).

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(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시킨 사람

제166조제3항제5호 중 “제161조제4항제2호”를 “제161조제2항제1호의2·제2호 및 제4항제2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1조(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 <p>제166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제1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</p>	<p>제161조(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 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(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시킨 사람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6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-----.</p>

<p>사용하여 비행한 사람(<u>제161조제4항제2호</u>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6.·7. (생략) ④ ~ ⑦ (생략)</p>	<p>-----(<u>제161조제2항제1호의2·제2호</u> 및 <u>제4항제2호</u>----- -----)</p> <p>6.·7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--	--